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399호 |
| 의결 연 월 일 | 2016년 월 일 (제348회) |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충청북도지사 |
| 제출연월일 | 2016년 5월 31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지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399 |
|--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시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추가 (안 제1조)
 - (현행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
 - (개정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추가 (안 제5조)
 - (현행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 - (개정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,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, 제91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u>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</u> | <u>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</u> 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, 제91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에 따라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5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</p> | <p>제5조(직원의 정수)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</p> |

관 계 법 령 발 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② 생략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1. 별정직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

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】

제29조의3(시 · 도의회의 교육 ·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) ① 시·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·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